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70340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심정훈

원고보조참가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호사 이재철

피고C

변론 종결 2020. 4. 8.

판결 선고 2020.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443,835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4. 2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443,835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약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8.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4. 2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등이 원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9.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인우

별지